

# 서울특별시

우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( 02 )731-6153~1 / 전송 731 - 6309

문서번호 시경 12210-596


시행일자 1995. 8.27.

(제 1 안)

수신 내부결재

참조

제목 훈령공포

취급		시 장
보존		
기획관리실장	전결	
시정개발담당관	117	
조직관리계장	13	
기안	장 학 훈 216	
		협조

1. 시장 방침 제790호('95.8.17)와 관련입니다.

822

2.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부시장의 분장사무를 명확히 하여 분야별 시장보좌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별첨훈령을 발령하고자 합니다.

가. 훈령제명

· 서울특별시부시장사무분장규정안

나. 발령예정일 : '95. 8.28.

첨부 발령안 1부. 끝.

(제 2 안)

수신 공보1담당관

제목 시보게제 의뢰

별첨훈령을 송부하니 시보에 게재 발령하기 바람.

첨부 발령안 2부. 끝.

(제 3 안)

수신 법무담당관

제목 훈령발령 통보

훈령 1건을 발령의뢰하고 그 안을 송부하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람.

첨부 발령안 1부 곁.

(제 4 안)

수신 수신처 참조

제목 훈령발령 통보

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부서장의 분야별 분장사무에 관하여  
별첨훈령을 발령하였음을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람.

첨부 훈령안 1부. 곁.

## 서 울 특 별 시 장

수신처 서실 01-03, 서과 01-71, 서본부 01-04, 서사 01-42

서울특별시부시장사무분장규정을

이에 발령한다

서울특별시장 조 순

1995년 8월 25일

## 서울특별시부시장사무분장규정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0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 의한 부시장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사무분장) 부시장의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.

1. 행정1부시장

가. 기획관리실·감사실·내무국·재무국·보사환경국·가정복지국·산업경제국·문화관광국·민방위국·소방본부·청소사업본부 및 공무원교육원 소관사항

나. 부시장업무중 다른 부시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

2. 행정2부시장

가. 도시계획국·주택국·도로국·교통국·하수국·상수도사업본부·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 및 지하철건설본부 소관사항

3. 정무부시장

가. 전담사항

(1) 공보관소관 업무

(2) 대국회·대의회 협조 및 정당에 관한 사항

나. 협의사항

(1) 시정 주요기본정책의 수립 및 조정

(2) 정책수립과 관련된 시산하 연구기관의 중요정책

(3) 예산·재정운용관련 주요시책

(4) 주요기구 조정

(5) 국제관계(의전)에 관한 사항

(6) 기타 시장이 지시한 사항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